

자동차기타정보 (이항목은매수인이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원하는경우에만기재합니다)

	항목	가격조사·산정액		
수리필요	외장	☐ 양호 ☐ 불량	내장	☐ 양호 ☐ 불량
	광택	☐ 양호 ☐ 불량	룸크리닝	☐ 양호 ☐ 불량
	휠	☐ 양호 ☐ 불량	운전석	☐ 전 ☐ 후 / 동반석 ☐ 전 ☐ 후 / 응급
	타이어	☐ 양호 ☐ 불량	운전석	☐ 전 ☐ 후 / 동반석 ☐ 전 ☐ 후 / 응급
	유리	☐ 양호 ☐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 있음 ☐ 없음 (☐ 사용설명서 ☐ 안전삼각대 ☐ 책 ☐ 스페너)		

최종가격조사·산정금액만원

이가격조사·산정가격은보험개발원이차량기준가격을비당으로한기준가격과([] 기술사회, [] 한국자동차친단보증협회) 기준서를적용하였음

15.특기사항및점검자의의견

성능·상태점검자

가격·조사산정자

FRP또는비금속탈부착가능부품은점검사항에서제외되며,중고차특성상부분적인부식판금도색은있을수있습니다.

유의사항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보중에관한사항등

1.

- 자동차매매업자는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제외)에기재된내용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고지함으로써매수인에게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거짓또는오류가있는성능상태점검내용을제공하여아래의보증기간또는보증거리이내에자동차의실제성능·상태가다른경우,자동차매매업자는매수인의재산상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며,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이를구상할수있습니다.(매수인이성능상태점검자가가입한책임보험등을통해별도로배상받는경우는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보증기간은(30)일,보증거리는(2,000)킬로미터로합니다.
(보증기간은30일이상,보증거리는2천킬로미터이상이어야하며,그중먼저도래한것을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매수인에게고지할때현재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보증범위(국토교통부고시)를첨부하여고지하여야합니다.동보증범위는'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보증범위'(국토교통부고시)에따르며,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또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의리콜에관한사항은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실매물조회및정비이력확인할수있습니다.
 - 자동차365 > 중고차실매물검색 > 차량번호입력
 - 자동차365 > 자동차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검색

2.

중고자동차의구조·장치등의성능·상태를고지하지아니한자,거짓으로점검하거나거짓고지한자는「자동차관리법」제80조제6호및제7호에따라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거짓으로성능·상태점검을하거나점검한내용과다르게자동차매매업자에게알린경우「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5조제1항에따라1차사업정지30일,2차사업정지90일,3차등록취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4.

12.사고이력인정은사고로자동차주요골격부위의판금,용접수리및교환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단,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부위는절단,용접시에만사고로표기합니다.
(후드,프론트엔더,도어,트렁크리드등외판부위및범퍼에대한판금,용접수리및교환은단순수리로서사고에포함되지않습니다)

5.

성능·상태점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자동차성능·상태점검방법에따라야합니다.

6.

체크항목판단기준(예시)

- 미세누유(미세누수):해당부위에오일(냉각수)이비치는정도로서부품노후로인한현상
- 누유(누수):해당부위에서오일(냉각수)이맺혀서떨어지는상태
- 부식:차량하부와외판의금속표면에화학반응에의해금속이아닌상태로상실되어가는현상(단순히녹슬어있는상태는제외합니다)
- 침수:자동차의원동기,변속기등주요장치일부가물에잠긴흔적이있는상태
- 현재주행거리:성능·상태점검당시해당차량주행거리계의주행거리를기록하되,기록한주행거리가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받은주행거리(주행거리계교체정보포함)보다적은경우'특기사항및점검자의의견'란에이를적어야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보중에관한사항등

7.

가격조사·산정자는아래의보증기간또는보증거리이내에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한정)에적힌내용에허위또는오류가있는경우계약또는관계법령에따라매수인에대하여책임을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보증기간은()일,보증거리는()킬로미터로합니다.
(보증기간은30일이상,보증거리는2천킬로미터이상이어야하며,그중먼저도래한것을적용합니다)

8.

매매업자는매수인이가격조사·산정을원할경우가격조사·산정자가해당자동차가격을조사·산정하여결과를이서식에적도록한후,반드시매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매수인에게서면으로고지하여야합니다.이경우매매업자는가격조사·산정자에게가격조사·산정을의뢰하기전에매수인에게가격조사·산정비용을안내하여야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격을기준가격으로조사·산정하되,기준서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제1호에해당하는자는기술사회에서발행한기준서를,제2호에해당하는자는한국자동차친단보증협회에서발행한기준서를각각적용하여야하며,기준가격과기준서는산정일기준가장최근에발행된것을적용합니다.

10.

특기사항란은가격조사·산정자의자동차성능·상태에대한견해가성능·상태점검자의견해와다를경우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가격조사·산정」은소비자가매매계약을체결함에있어중고차가격의적절성판단에참고할수있도록법령에의한절차와기준에따라전문가가격조사·산정인이객관적으로제시한가액입니다.따라서「가격조사·산정」은소비자의자율적선택에따른서비스이며,가격조사·산정결과중고차가격판단에관하여법적구속력은없고소비자의구매여부결정에참고자료로활용됩니다.

점검장면촬영사진

서명

「자동차관리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0조에따라
([O]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점검,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25년07월25일(유효기간:2025년11월21일까지)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고지자

한금석

(인)

주식회사에이피에스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위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선택)를교부받은사실을확인합니다.
년월일매수인(서명또는인)

성능점검보증수수료147,950원